

제316회 정례회  
2012. 12. 12.(수)

# 심 사 보 고 서

충청북도 공공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

충청북도의회  
건설소방위원회

「충청북도 공공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

# 심 사 보 고 서

2012. 12. 12.(수)

건설소방위원회

## 1. 심사경과

가. 제 출 자 : 충청북도지사

나. 제출일자 : 2012년 11월 2일

다. 회부일자 : 2012년 11월 7일

라. 상정일자 : 2012년 11월 26일

(제316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1차 건설소방위원회)

## 2. 제안설명 요지

(제안설명자 : 균형건설국장 신 병 대)

가. 제안이유

- 공공디자인에 관한 사항을 심의·자문하기 위한 공공디자인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기하고자 위원회 및 각 분야별 소위원회 위원수를 상향 조정하려는 것임.

## 나. 주요내용

- 공공디자인위원회 구성인원이 적어 분야별 위원을 포함한 위원회 개최에 어려움이 있음에 따라 위원 구성을 15명에서 30명으로 조정 (안 제14조)
- 공공디자인위원회 소위원회를 7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·운영할 경우, 심사대상 시설물의 각 분야에 전문성 있는 위원으로 구성하기에 한계가 있음에 따라 11명 이내로 조정 (안 제18조)

## 3. 검토보고 요지

### (건설소방수석전문위원 : 문 홍 열)

#### 가. 조례개정의 필요성

- 소위원회 운영 시 안전이 많을 경우 분야별 최소인원이 초과하여 위원회 성원이 어려움에 따른 현실적인 문제를 개선하려는 내용으로,
- 공공디자인위원회 및 소위원회 위원수를 상향조정하여 회의를 원활하게 운영하고자 조례일부를 개정하려는 사항으로 조례개정의 필요성을 충족함.

#### 나. 조례내용의 정당성 및 법 적합성

- 본 조례안은 법령에 위반되거나 저촉되는 사항이 없음.

#### 다. 조례내용의 기술적인 사항

- 충청북도 공공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검토한 바, 조례개정의 필요성과 정당성이 인정되고 상위법령에 위배되는 사항이 없이 간결하게 제출되었으므로, 본 조례의 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됨.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“생략”
5. 토론요지 : “생략”
6. 심사결과 : 원안가결
7. 소수의견요지 : “없음”
8. 기타 필요한 사항 : “없음”
9. 심사보고서 첨부서류

○ 충청북도 공공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충청북도조례 제 호

## 충청북도 공공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충청북도 공공디자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4조제1항 본문 중 “15명 이하”를 “30명 이내”로 한다.

제18조제1항 중 “7명 이하”를 “11명 이내”로 한다.

### 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# 신 · 구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14조(위원회의 구성)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<u>15명 이하</u>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 이 경우 공무원인 위원은 위원총수의 3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.</p> <p>② ~ ④ (생략)</p>	<p>제14조(위원회의 구성) ① ----- ----- -----30명 이내----- ----- -----.</p> <p>② ~ ④ (현행과 같음)</p>
<p>제18조(소위원회)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<u>7명 이하</u>의 위원으로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.</p> <p>② ~ ④ (생략)</p>	<p>제18조(소위원회) ① ----- ----- -----11명 이내----- ----- -----.</p> <p>② ~ ④ (현행과 같음)</p>

## 관련법령 발췌

### □ 지방자치법

제22조(조례)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. 다만,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.

## 충청북도 공공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

### 1. 사업개요

- 공공디자인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원활하게 운영하고자 위원회 및 소위원회 위원수를 상향 조정

### 2. 비용 발생 요인

- 「충청북도 공공디자인조례」 제20조(심의위원회 수당과 여비)에 따라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 「충청북도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」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

### 3. 관련조문

- 「충청북도 공공디자인조례」 제20조(심의위원회 수당과 여비)

### 4. 비용 추계결과

#### 가. 추계의 전제

- 충청북도 공공디자인 자문·심의를 위한 위원회 개최
  - 개최시기 : 월 1~2회 / 년 15회 예상
  - 위원회구성 : 11인 이내 예정

#### 나. 추계 결과

- 년 15회 × 11명 × 100천원 = 16,500천원
- 매년 16,500천원의 위원회 운영 관련 예산이 필요

#### 다. 재원조달방안

- 도 자체재원 사용

### 5. 연도별 비용추계서

(단위 : 천원)

구 분	1차년도 (2013년)	2차년도 (2014년)	3차년도 (2015년)	4차년도 (2016년)	5차년도 (2017년)	계
세 출	16,500	16,500	16,500	16,500	16,500	82,500
심의위원회 참석수당 등 지급	16,500	16,500	16,500	16,500	16,500	82,500

### 6. 작성자 : 균형건설국 건축디자인과장 길기웅